

상담심리사 취득과정

목 차

I. 1급 취득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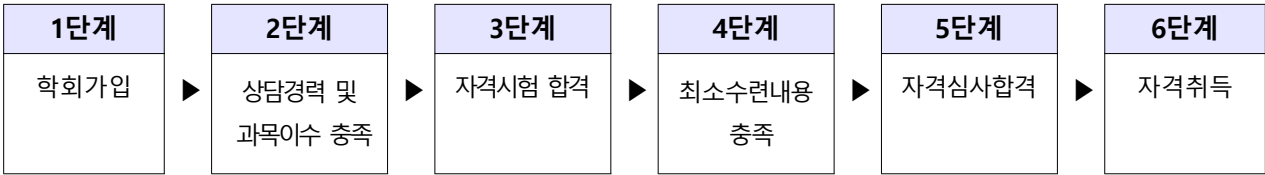
1.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	1
2.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	3
3. 상담 비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	5
4.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	7
5. 외국학회의 인턴십을 마친자	9

II. 2급 취득과정

1. 상담관련 석사재학	12
2. 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자	14
3. 비상담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	16
4.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	20

I. 1급 취득과정

1. 상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



1단계	<p>학회가입</p> <p>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</p>
2단계	<p>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</p> <p>① 석사학위 취득 후, 3년(36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</p> <p>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○ 단, 수련 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, 석사학위 취득 후 2급을 취득한 자는 수련내용 및 경력을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● 이수과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중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(중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
3단계	<p>자격시험 합격</p> <p><자격시험 응시서류></p> <p>① 자격시험 응시원서</p> <p>② 상담경력확인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통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: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, 심리진단 및 평가,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,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4단계	<p>최소수련내용 충족</p> <p>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</p> <p>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 <표 1>참고</p>
5단계	<p>자격심사합격</p> <p><자격심사 청구서류></p> <p>① 자격심사 응시원서</p> <p>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</p> <p>③ 이력서</p> <p>④ 수련수첩</p> <p>⑤ 연구실적물</p> <p>⑥ 공개사례발표자료</p> <p>⑦ 대학원 학위증명서</p> <p style="color: red;">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6단계	<p>자격취득</p> <p>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</p> <p>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</p> <p>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</p>

2.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



1단계	학회가입 상담심리사 2급 취득 후 정회원(심리사 정회원)으로 자격변경
2단계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2급 취득 후 4년(48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○ 단,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2급 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● 이수과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목 이수 없음 (2급 취득자로 1급에 응시할 경우, 이수과목 확인 하지 않음)
3단계	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2급 자격증 사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통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: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, 심리진단 및 평가,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,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4단계	최소수련내용 충족 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 <표 1>참고
5단계	자격심사합격 <자격심사 청구서류>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 ③ 이력서 ④ 수련수첩 ⑤ 연구실적물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 border: 1px solid #ccc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</div>
6단계	<p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 margin-bottom: 5px;">자격취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3. 상담 비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



1단계	<p>학회가입</p> <p>상담 비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준회원으로 입회(단, 모든 응시조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박사학위취득 후 정회원으로 변경한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)</p>
2단계	<p>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</p> <p>① 박사과정 입학 후, 3년(36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</p> <p>② 박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·석사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● 주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 ○ 단, 수련받을 당해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, 박사과정 입학 이전의 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● 이수과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중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심리학 등(중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검정응시 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박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 </div>
3단계	<p>자격시험 합격</p> <p><자격시험 응시서류></p> <p>① 자격시험 응시원서</p> <p>② 상담경력확인서</p> <p>③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명서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● 공통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: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, 심리진단 및 평가,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,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</div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4단계	<p>최소수련내용 충족</p> <p>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</p> <p>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 <표 1>참고</p>
5단계	<p>자격심사합격</p> <p><자격심사 청구서류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 종합확인서 ③ 이력서 ④ 수련수첩 ⑤ 연구실적물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⑦ 대학원 학위증명서 <p>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6단계	<p>자격취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4.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



1단계	학회가입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
2단계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②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(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회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) ③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 ④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지 자격증 인정여부 결정
3단계	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 ③ 이력서 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 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외국학위의 경우,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) ⑥ 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자격증 사본 ⑦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 ⑧ 자격증 및 경력·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
4단계	최소수련내용 충족 ① 공개사례발표 1사례, 총 10회기 이상
5단계	자격심사합격 <자격심사 청구서류>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공개사례발표자료 ③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, ③ ~ ⑧ 서류 제출 ※ 자격시험 응시 후,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, 위의 ①, ② 서류만 제출 ※ 제출 서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, 녹음자료
6단계	자격취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5. 외국학회의 인턴십을 마친자



1단계	학회가입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정회원으로 가입 또는 자격변경
2단계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② 본 학회와 MOU를 체결한 외국학회(APA, ACA)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 과정을 마친 자 ③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 ④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인정여부 결정
3단계	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 ③ 이력서 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 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외국학위의 경우,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) ⑥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 ⑦ 경력·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
4단계	최소수련내용 충족 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
5단계	자격심사합격 <자격심사 청구서류> ① 자격심사 응시원서 ② 수련수첩 ③ 공개사례발표자료 ④ 응시료 입금증 사본 ⑤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, ③ ~ ⑦ 서류 제출 ※ 자격시험 응시 후,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, 위의 ①, ②, ③, ④ 서류만 제출 ※ 제출 서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6단계	자격취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<표1>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1급)

영역		일반 수련자	
접수면접		-	
개인상담	면접상담	20사례 합 400회 이상 (부부, 가족, 아동상담 포함)	
	수퍼비전	50회(공개사례발표 4회 포함)이상	
집단상담	참여경험	2개 집단 이상(집단별 15시간 이상) 총 30시간 이상 참여	
	리더 또는 보조리더	2개 집단 이상(집단별 15시간 이상) 총 30시간 이상 진행	
	수퍼비전	2개 집단 이상(집단별 15시간 이상)	
심리평가	검사실시	20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	
	검사해석	20사례 이상	
	수퍼비전	10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	
	검사의 종류설명	*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- MMPI, HTP, BGT, DAT, SCT, KFD,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: K-WAIS, K-WPPSI, K-WISC, KEDI-WISC, K-ABC 등 단, 한 검사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 *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(개인용 이외의 검사) - 검사의 실시, 채점,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,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, 판매하는 검사 예 : 성격전단검사, 적성진단검사, MBTI 등 단, 한검사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	
공개사례발표		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4사례 이상, 총 40회기 이상. 단, 상담심리사 2급 자격으로 응시할 경우 개인상담 3사례 이상, 총 30회기 이상 (3주 이상 발표간격을 두고 발표)	
상담사례 연구활동		학회 6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30회 이상 참여	
학술 및 연구활동		학회 또는 유관 학술지에 발표한 1편 이상의 연구 논문 제출	
영역		상담심리사 1급	
		외국자격소지자	외국수련자
개인상담	면접상담	-	7사례, 총 100회기 이상
	수퍼비전	-	5회
공개사례발표		1사례(10회기 이상)	2사례(20회기 이상)

Ⅱ. 2급 취득 과정

1. 상담관련 석사재학



1단계	학회가입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경우,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
2단계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 ① 석사 입학 후, 1년(12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 ② 석사과정 중 과목이수(학부과정 중 이수과목 인정되지 않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, 입회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입학일 이후부터 인정 ● 이수과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과목 :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,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방법, 상담면접,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 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 등(중 4과목 이상 이수)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고급성격심리학, 고급사회심리학, 고급발달 심리학 등(중 1과목 이상 이수)(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한다. 단, 2016년 1월 1일 이전 입회자는 자격 검정 응시시에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. 개정 전 : 상담3과목, 기초1과목) ○ 과목 이수는 석사과정 중 본인의 전공과목 중에 전공학점으로 이수한 과목만 인정함.
3단계	자격시험 합격 <자격시험 응시서류>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성적증명서 및 석사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통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응시서류 외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4단계	<p>최소수련내용 충족</p> <p>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</p> <p>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 <표 2>참고</p> <p>※ 본 학회의 심리사수련회 수료자는 <표 3> 참고</p>
5단계	<p>자격심사합격</p> <p><자격심사 청구서류></p> <p>① 자격심사 응시원서</p> <p>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</p> <p>③ 이력서</p> <p>④ 수련수첩</p> <p>⑤ 최종학위증명서(재학증명서)</p> <p>⑥ 공개사례발표자료</p> <p style="color: red;">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6단계	<p>자격취득</p> <p>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</p> <p>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</p> <p>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</p>

2. 상담관련 학사학위 취득자



1단계	<p>학회가입</p> <p>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</p>
2단계	<p>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</p> <p>① 학사학위 취득 후, 2년(24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</p> <p>② 학부과정 중 과목이수 (상담 3과목, 기초 3과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수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○ 단, 학회 입회 이후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 이후부터 인정 ● 이수과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과목 : 심리치료이론, 집단상담, 상담사례실습, 정신병리, 심리평가, 가족상담, 청소년상담, 진로상담, 아동상담, 상담심리학, 이상심리학, 심리검사, 임상심리학, 학교심리학, 교육심리학 등 ○ 기초과목 : 심리통계, 연구방법론, 실험설계, 동기와 정서, 성격심리학, 사회심리학, 발달심리학, 학습심리학, 조사방법론 등
3단계	<p>자격시험 합격</p> <p><자격시험 응시서류></p> <p>① 자격시험 응시원서</p> <p>② 상담경력확인서</p> <p>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통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서류 이외의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4단계	<p>최소수련내용 충족</p> <p>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</p>

	<p>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 <표 2>참고</p> <p>※ 본 학회의 심리사수련회 수료자는 <표 3> 참고</p>
5단계	<p>자격심사합격</p> <p><자격심사 청구서류></p> <p>① 자격심사 응시원서</p> <p>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</p> <p>③ 이력서</p> <p>④ 수련수첩</p> <p>⑤ 최종학위증명서</p> <p>⑥ 공개사례발표자료</p> <p>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● 공개사례 발표자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
	<p>자격취득</p> <p>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</p> <p>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</p> <p>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</p>
6단계	

3. 비상담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



1단계	<p>학회가입</p> <p>비상담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경우,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</p>
2단계	<p>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</p> <p>① 학사학위 취득 후, 3년 (36개월) 이상의 상담경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주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주수련감독자의 감독하의 상담경력만 인정. 단, 수련받을 당해 년도에 1급 전문가가 슈퍼바이저 자격보유자여야 함(매년 슈퍼바이저 자격보유자 명단은 공지사항 참고) ○ 모든 수련내용 및 경력은 학회 입회일 이후부터 인정 ● 이수과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수과목 없음.
3단계	<p>자격시험 합격</p> <p><자격시험 응시서류></p> <p>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② 상담경력확인서 ③ 학부 성적증명서 및 학사학위 증명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통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: 상담심리학, 발달심리학, 이상심리학, 학습심리학, 심리검사 (5과목) ○ 각 과목별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합격 ○ 자격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5년 ● 자격시험 부분 과목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교 강의경력,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3과목까지 면제 ○ 위 서류 이외의 제출서류 : 자격시험 면제신청서/강의경력 및 저서 등의 실적에 관한 증빙서류
4단계	<p>최소수련내용 충족</p> <p>① 「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」 제 7조의 최소수련내용을 충족 ② 최소수련내용 : 아래 <표 2>참고</p> <p>※ 본 학회의 심리사수련회 수료자는 <표 3> 참고</p>
5단계	<p>자격심사합격</p> <p><자격심사 청구서류></p> <p>① 자격심사 응시원서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상담경력종합확인서 ③ 이력서 ④ 수련수첩 ⑤ 최종학위증명서 ⑥ 공개사례발표자료 <p style="color: red;">※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양식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div style="background-color: #f0f0f0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개사례 발표자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 각 사례별 제출 ○ 그 중 한 개의 녹음자료 제출 </div>
6단계	<p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 margin: 0;">자격취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

<표2>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2급)

영역		상담심리사 2급
접수면접		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20회 이상
개인상담	면접상담	면접상담5사례, 합 50회 이상
	수퍼비전	10회(공개사례발표 2회 포함)이상
집단상담	참여	참여 또는 보조리더 -2개 집단 이상 (집단별 15시간 이상)
	실시	-
	수퍼비전	-
심리평가	검사실시	10사례 이상 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
	검사해석	10사례 이상
	수퍼비전	5사례 이상(1사례당 2개 이상,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)
	검사의 종류설명	*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 - MMPI, HTP, BGT, DAT, SCT, KFD, 성인 및 아동용 개인용 지능검사 예: K-WAIS, K-WPPSI, K-WISC, KEDI-WISC, K-ABC 등 단, 한 검사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 *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표준화 검사(개인용 이외의 검사) - 검사의 실시, 채점, 해석 등 전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, 공인된 출판사에서 제작, 판매하는 검사 예 : 성격전단검사, 적성진단검사, MBTI 등 단, 한검사가 전체사례의 1/2을 초과할 수 없음
공개사례발표	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, 총 10회기 이상 (3주 이상 발표 간격을 두고 발표)	
상담사례 연구활동	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	

<표3> 상담심리사 수련회 참가자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수련내용(상담심리사 2급)

		~ 2009년	2010년 ~ 2011년	2012년 ~
접수 면접		-	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10회 이상	상담 및 심리검사 접수면접 10회 이상
개인 상담	면접상담	2사례, 합 20회 이상	3사례, 합 30회 이상	4사례, 합 40회 이상
	수퍼비전	5회 이상 (공개사례발표2회 포함)	7회 이상 (공개사례발표2회 포함)	7회 이상 (공개사례발표2회 포함)
집단 상담	참 여	-	-	1개 집단 (하계수련회 실습시간만큼 제외)
심리 평가	검사실시	5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	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	10사례 이상 1사례당 2개 이상 그 중 개인용 검사 1개 포함
	검사해석	5사례 이상	10사례 이상	10사례 이상
	수퍼비전	2사례 이상 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포함	5사례 이상 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포함	5사례 이상 1사례 당 2개 이상 그 중 진단용 검사 1개 포함
공개사례발표		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서 개인상담 2사례 이상, 총 10회기 이상 (3주 이상 발표 간격을 두고 발표)		
상담사례 연구활동		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2회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, 상담사례 토의모임에 총 10회 이상 참여		

4.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



1단계	학회가입
	상담관련 분야의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경우, 준회원으로 가입 신청
2단계	상담경력 및 과목이수 충족
	① 외국의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자격증 소지(각국 정부나 주정부 또는 각국 심리학회의 공인된 자격검정 절차를 통과한 수준의 자격증)
	② 국내에서 1년 이상의 상담경력 ③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지 자격증 인정여부
3단계	자격시험 합격
	<자격시험 응시서류>
	① 자격시험 응시원서
	② 국내 상담경력확인서
	③ 이력서
	④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자의 추천서
	⑤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외국학위의 경우, 한국연구재단 필증 첨부)
	⑥ 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자격증 사본
⑦ 외국에서의 상담 수련실적 및 상담경력 증빙서	
⑧ 자격증 및 경력·수련실적에 대한 번역본	
4단계	최소수련내용 충족
	<최소 수련내용 충족> ① 공개사례발표 1사례, 총 10회기 이상
5단계	자격심사합격
	<자격심사 청구서류>
	① 자격심사 응시원서
	② 공개사례발표자료
	③ 자격시험 응시서류 중, ③ ~ ⑧ 서류 제출
※ 자격시험 응시 후, 같은 해에 자격심사에 응시할 경우, 위의 ①, ② 서류만 제출	
※ 제출 서류의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 응시하는 해의 자격검정공고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	
● 공개사례 발표자료	
○ 1회기 이상 완전 축어록이 포함된 공개사례발표자료, 녹음자료	

6단계	자격취득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심리학회 정회원 가입 및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② 한국상담심리학회 취득 연도 연회비 납부 완료 및 자격변경에 따른 연회비 차액 납부 완료 ③ 자격증 수여식 참석, 자격증 수령